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의제공으로 저출산 시대 출산 가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출산 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위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 추가(안 제5조, 안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생아”라 함은”을 ““신생아”란”으로, “갓난아이”를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시와”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호자”라 함은”을 ““보호자”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 신고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지원”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읍·면·동장은 건강보험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 및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읍·면·동 장에게도 관련내용”을 “읍·면·동장에게도 관련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구미시 자체 급부	☐ 출산축하용품지원	☐ 첫째 자녀(이름 :)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 자녀(이름 :) ☐ 둘째 자녀 이상 (이름 :)
	☐ 출산축하금지원	☐ 셋째 자녀 (이름 :) ☐ 넷째 자녀 (이름 :) ☐ 다섯째 자녀 이상 (이름 :)
	☐ 신생아건강보험지원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일반	☐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급여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
소속	직	성명		③ 전 입 일 ☐ 부 전입일() ☐ 모 전입일 ()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

안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내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 받았을 경우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환수 및 중지 조치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 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대리신청인)	→ 접수 읍·면·동 장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읍·면·동, 시,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등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읍·면·동, 시, 보건소, 한전 등/ 출산장려(축하)금·양육비·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구미시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따라</u>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u>뜻은</u> ----- -----.
1. " <u>신생아</u> "라 함은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u>갓난아이</u> 를 말한다.	1. " <u>신생아</u> "란 ----- ----- <u>출생 후 28</u> <u>일 미만의 영아</u> --.
2. " <u>신생아 건강보험 지원</u> "이라 함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u>시와</u>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 " <u>이</u> 란 ----- ----- - <u>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u> ----- ----- -----.
3. " <u>보호자</u> "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후	3. " <u>보호자</u> "란 ----- ----- -----

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신생아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기준의 변경이나 중단시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지원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건강보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장은 건강보험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

-----.

제4조(지원기준) ① -----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시장-----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 신고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

제6조(지원 절차) -----
-----.

1.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 및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
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
료 청구서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2. (생략)

제8조(보험기관 선정) ① (생략)

②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
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따
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면
·동장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전출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
장은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

-----.

2. -----

----- 따라 -----
-----.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2. (현행과 같음)

제8조(보험기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한 사항 -----
-----.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

인적사항 등을 전출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내 전출시에는 전입지
읍·면·동 장에게도 관련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에게도 관련 내
용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 9. 생략

③ ~ ⑤ 생략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소관 실·과		건강증진과
입 안 자	과 장	조 영 인
	담 당	김 영 옥
	담 당 자	김 정 숙 (480-4073)